

사랑의집 급여 이용 정보

사랑의집 요양원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울로 828번길 198-50
☎ 031) 643-4041

● 인사말

“기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사랑의집** 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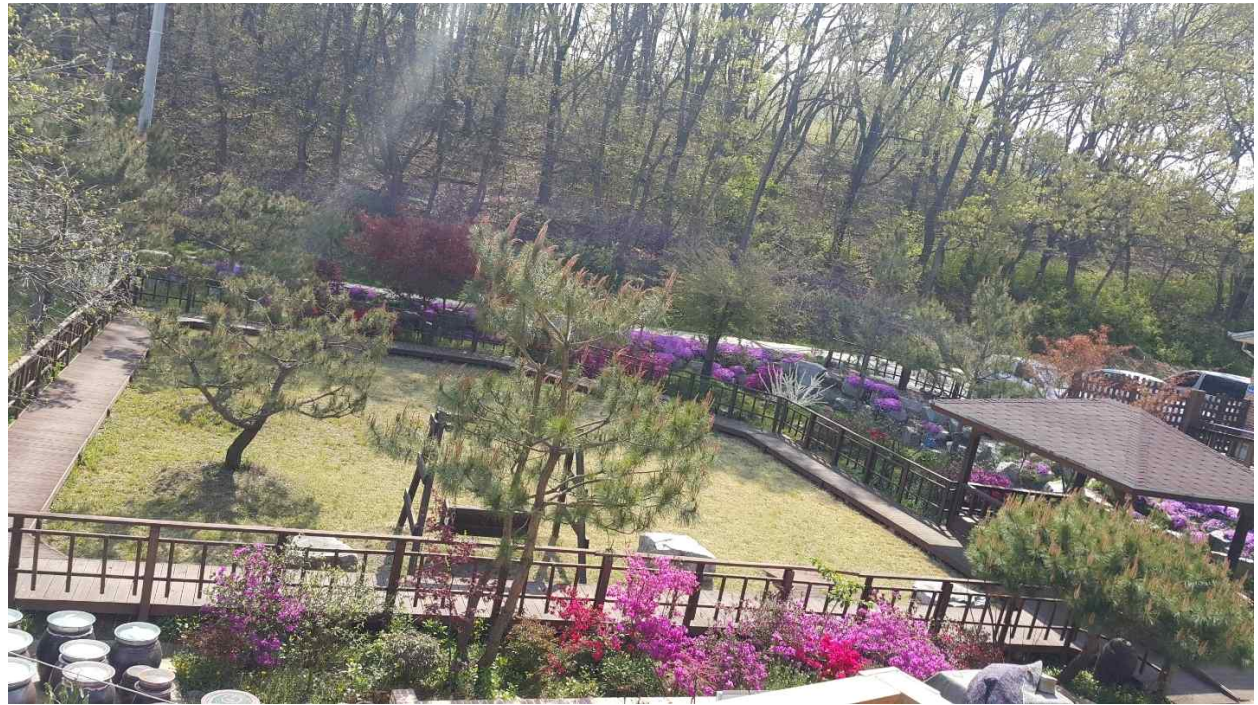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양원 소개

기관명	사랑의집	설치일자	2009.07.10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29
대 표 자	박홍열	시 설 장	박홍열
전화번호	031-643-4041	Fax	031-643-4042
주소	경기도 이천시 홀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비급여 항목	상급실이용료, 간식		
시설규모	☐ 건축면적 <u>785</u> m ² ☐ 연면적 <u>905.58</u> m ²		



1. 이용절차

· 입소상담(전화, 방문) → 구비서류 접수 및 준비 →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 → 입소

2.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병관련 진단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및 처방전 등

3. 종사자 근무체계

○ 인력현황

총원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현원	1	1	1	1	9

○ 근무현황

평 일	주 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야 간	요양보호사
주말 · 휴일	주 간	요양보호사, 시설장
	야 간	요양보호사, 시설장

4. 노인요양시설 수가안내 및 배상책임보험안내

【 배상책임보험 가입사항 】

책임보험회사명			
(무)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재물보험 가입내용 : 목적물명 사랑의집			
2022-06-16 ~ 2037-06-16			
계약기간			
MOTION KB 손해보험			
보험증권(계약자용) (무)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22.04)(23509)			
계약 내용		보험료	
계약자 증권번호	박홍열 2022-3162913	1회보험료	332,446원
계약형태	15년납 15년면기 비즈케어 실손보상형	보장보험료	332,446원
보험기간	2022-06-16 ~ 2037-06-16	적립보험료	0원
납입형태	월납 자동이체	보험료할인	적용된 할인 없음
만기수익자	박홍열 수익자 지정약정 : Y		
예상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액		
장예언 전용보험 잔액특약	미가입		
계약자주소	(주택)(17423) 경기 이천시 읍면 금융로828번길*****		
※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단순 확인사항이며, 담보 및 가입 금액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내용 및 담보별 상세내용은 청약서 및 보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보험증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12조·제13조에 의거하여 "KB손해보험"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재물보험 가입내용 : 목적물명_사랑의집			
소재지1 소유자	(17423) 경기 이천시 읍면 금융로828번길 198-50 (오성리, 사랑의집) 소유자 : 박홍열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금수 건물구조	건물금수 : 3급 건물구조 : 철골조(나철골), 슬래브, 샌드위치판넬 면적 : 1299.00㎡		
업종	실제업종 : 0401 노인요양병원/시설 요율업종 : 0401 노인요양병원/시설		
수용장소(기타상세)	사랑의 집 전체수용(1,2동)/간판은 시설에 수용		
목적물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건물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배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 단, 건물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전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전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억원	15년/15년
	구내폭발파열위험(실손)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실손보상	1억원	15년/15년
	항공기자랑손해(실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및 미로인한 폭발, 파열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차량의 충돌, 접촉 및 미로인한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단,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 보상)	1억원	15년/15년
대표이사 사 장 구본욱			
고객콜센터 (상담 및 문의) 1544-0114	홈페이지 www.kbsure.co.kr or.kbsure.co.kr	영업담당자 서울고차지점 신동민 ☎010-2697-7484	발급일시 2025-09-23 13:04:56
20223162913 [계약자용] - 1/5 - 202509231304563816289015			

5.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 갈아입기 도움	1) 옷 갈아입기 도움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1)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 도움	1) 화장실사용 2) 기저귀 교환 3)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들)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1)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 훈련	1. 신체 · 인지기능향상프로 그램	1) 신체 ·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 · 기본동작 훈련 · 일상생활 동작훈련	1) 신체기능훈련 · 기본동작훈련 · 일상생활 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향상 훈련	1) 인지 및 정신기능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1) 여가, 정서 프로그램

● 간호서비스 안내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들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 혈액 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6. 프로그램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여가 20분)	웃음치료 (60분)			미술치료 (60분)	
		인지프로그램 (20분)	인지프로그램 (20분)		인지프로그램 (20분)
기능운동훈련 (20분)	기능운동훈련 (20분)	기능운동훈련 (20분)	기능운동훈련 (20분)	기능운동훈련 (20분)	기능운동훈련 (20분)
▶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송년행사 진행, 지역사회행사 참여					

2025년 사랑의집 급여 설명서
본 인 부 담 금 (2.3명기준)

구분	등급	한달	공단부담금	개인부담금	식대(간식포함)	촉탁의 비용	총금액
20%	1등급	31	2,133,540	533,390	347,200	3,680	884,270
		30	2,064,720	516,180	336,000	3,680	855,860
		28	1,927,070	481,800	313,600	3,680	799,080
	2등급	31	1,979,290	484,820	347,200	3,680	835,700
		30	1,915,440	478,860	336,000	3,680	818,540
		28	1,787,740	449,940	313,600	3,680	762,220
	3-5등급	31	1,868,930	467,230	347,200	3,680	818,100
		30	1,808,640	452,160	336,000	3,680	791,840
		28	1,688,060	422,020	313,600	2,200	737,820
12%	1등급	31	2,346,900	320,030	347,200	2,200	669,430
		30	2,271,190	309,710	336,000	2,200	647,910
		28	2,119,780	289,060	313,600	2,200	604,860
	2등급	31	2,177,220	296,890	347,200	2,200	646,290
		30	2,106,980	287,320	336,000	2,200	625,520
		28	1,966,520	268,160	313,600	2,200	583,960
	3-5등급	31	2,055,820	280,340	347,200	2,200	629,740
		30	1,989,500	271,300	336,000	2,200	609,500
		28	1,856,870	253,210	313,600	2,200	569,010
8%	1등급	31	2,453,580	213,350	347,200	1,470	562,020
		30	2,374,430	206,470	336,000	1,470	543,940
		28	2,216,130	192,670	313,600	1,470	507,740
	2등급	31	2,276,180	197,930	347,200	1,470	546,600
		30	2,202,760	191,540	336,000	1,470	525,010
		28	2,055,910	178,770	313,600	1,470	493,840
	3-5등급	31	2,149,270	186,890	347,200	1,470	535,560
		30	2,079,940	180,860	336,000	1,470	518,330
		28	1,941,270	168,810	313,600	1,470	483,880

운 영 규 정 개 요

기 관 명	사랑의집 요양원	기관기호	1-4150000062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개정법)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울로 828번길 198-50		
대 표 자	박 흥 열	시설장	박 흥 열
사업자번호	126-82-88871	전화/팩스	031) 643-4041 / 643-4042
급여의 종류	노인요양시설(개정법)		
입소(이용)정원	정원 29명	이메일	hungyul11@hanmail.net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9명
2. 입소대상
 -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시설급여로 판정받은 자
 -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과 홈페이지, 홍보 전단지 안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게시 자료 참조 바람
4. 서비스 제공자 및 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을)의 권리, 의무

- ① 서비스 이용자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서비스 이용자 “갑”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계약에 따른 성실한 표준 급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권리와 의무

2) 서비스이용자(입소자) (갑)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서비스이용자(입소자) (갑)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④ 입소자가 퇴소시 이용료 잔여금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 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월 2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영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 까지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 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영월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원장,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후원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 ⑥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②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출 · 외박에 관한 관리
-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 입원비용 등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1.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 요양시설 사랑의 집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행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관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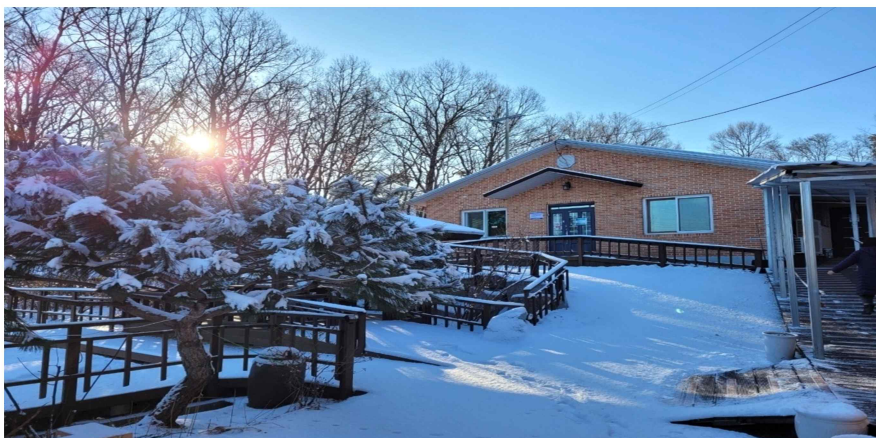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의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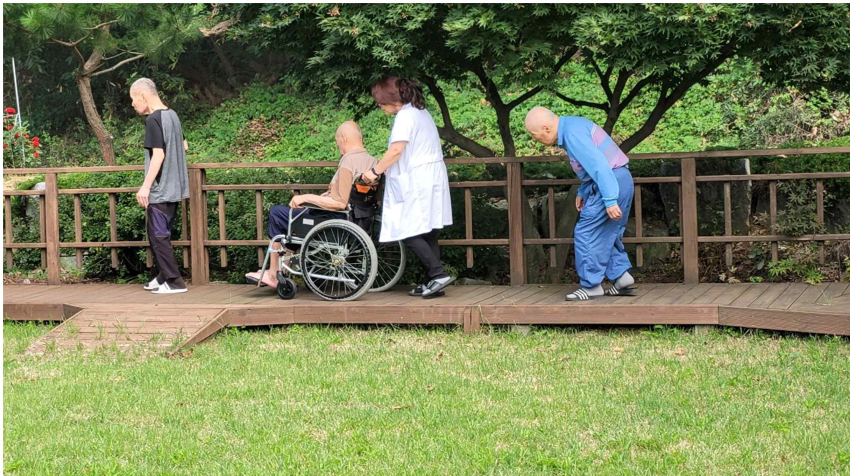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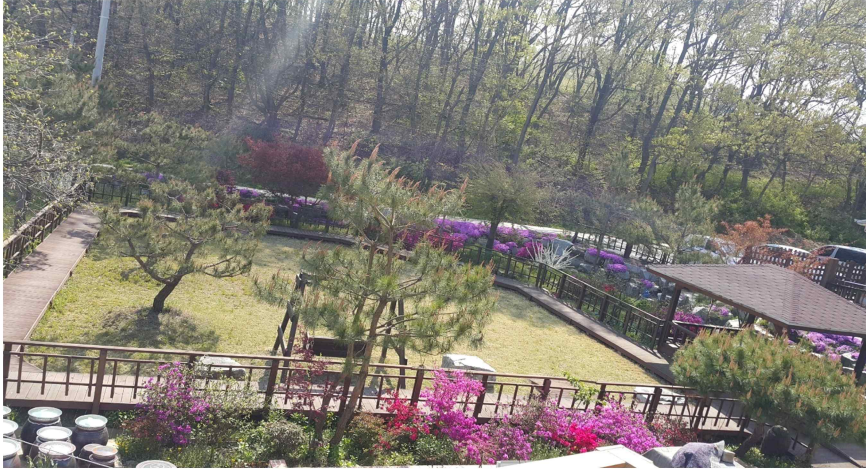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거나,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1588-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 사진



♥ 봄이면 꽃들이
만개하는 정원,
가을이 되면 다른
풍경이 이루어
진답니다~♥



♥ 봄이면 꽃들이
만개하는 정원,
에서 어르신들과
산책을 한답니다~♥



♥ 오전, 오후 보행
가능한 어르신들
근력강화 및 보행
훈련시간 입니다.♥

♥ 매달 생신 있는

노인 요양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을 위해
간소하지만
생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들과 모여
앉아 함께 체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으로 어르신들의 얼굴은 스티커 대체합니다.